

目

次

1. 平昌郡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에對한
郡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증改正條例案 —— 28
2. 平昌郡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
案 _____ 37
3. 平昌郡低所得住民生活安定基金融資條例증改正
條例案 _____ 49
4. 道稅徵收交付率調整에關한建議案 _____ 52
5. 林道施設等真相把握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57
6. 特別消費稅를目的稅로轉換하려는政府方針撤回
促求建議에對한回信 _____ 58

평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議案	
番號	121

제출년월일: 1993. 7.

제 출 자: 평 장 군



김은도

1. 提案理由

- 국가유공자에우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字

-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에만 군세를 과세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안 제2조 제2항)

평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복합 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u>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p> <p>.....</p> <p>..... <u>국가유공자중 상이</u> <u>일은 자</u></p> <p>.....</p> <p>.....</p>
<p>제2조(면제대상) ①(생략)</p> <p>② <u>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u></p>	<p>제2조(면제대상) ①(현행과 같음)</p> <p>② <u>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u></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3조(면제신청) ① <u>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u></p>	<p>제3조(면제신청) ① <u>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u></p> <p>② <u>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 별 표 】

(현 행)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u>14, 79, 98, 99, 102, 104, 105</u>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급 1항 (복합호수자)	35, 36,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급 2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7, 49, 50,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개정안)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금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복합 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과세면제등허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내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년월일 : 1993. 8.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정승환 

제안이유

1993.6.11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은 5인으로 하되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은 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1인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함.
- 위원장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인중에서, 부위원장은 군 의회의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함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규정)

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기 능
 -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하고,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 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요구와 진술을 받을 수도 있음.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는 필요한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 있음.
-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퇴직일로 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음.

○ 관 할

- 군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
- 군수 산하공무원과 의료원장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함.

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음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지시
 - 재산등록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산등록 불이행
 - 허위등록등 불성실 등록
 - 등록사항의 심사불응등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에 대한 고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시 고발

마.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사항 (안 제7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 간사와 사무직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바.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사항 (안 제8조)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음.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 3인
2. 평창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해당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해당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평창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평창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 취

공직자윤리법 제9조

第9條 (公職者倫理委員會) ① 다음 각號의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舉管理委員會·政府·地方自治團體 및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에 각각 公職者倫理委員會를 둔다. (改正 91·11·30, 93·6·11)

1. 第10條第1項에 規定하는 財産公開對象公職者에 대한 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結果의 처리
2. 第8條第1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
3. 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
4.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사항

② 각 公職者倫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 (改正 91·11·30, 93·6·11)

1.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會議員 기타 國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2. 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는 法官 기타 法院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事項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裁判官 기타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各級選舉管理委員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5. 서울特別市·直轄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所屬公務員,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 서울特別市·直轄市·道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6. 市·郡·區(自治區인 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公職者倫理委員會는 市·郡·區所屬公務員, 市·郡·區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7.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所屬公務員 및 教育委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8.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號 내지 第7號외의 公職者와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③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9人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은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3인은 法官·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④公職者倫理委員會의 委員의 任期·選任 및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정한다. <新設 93·6·11>

1.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會規則
 2. 大法院公職者倫理委員會는 大法院規則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規則
 4. 中央選舉管理委員會公職者倫理委員會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
 5.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大統領令
 6. 서울特別市·直轄市·道公職者倫理委員會 및 市·郡·區公職者倫理委員會와 서울特別市·直轄市·道教育廳公職者倫理委員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 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이 法과 第4項 各號에 規定된 規則·大統領令 또는 條例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新設 93·6·11>

제21조

第21條 (委任規定)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大統領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1·11·30, 93·6·11>

제10조 제1항

第10條 (登錄財産의 公開) ①公職者倫理委員會는 管轄登錄義務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 本人과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의 財産에 관한 登錄事項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사항 申告內容을 登錄 또는 申告期間 만료후 1月이내에 官報 또는 公報에 게재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國家安全企劃部の 部長 및 次長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
2.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員
3. 1級인 一般職 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相當하는 報酬를 받는 別定職公務員
4. 持1級·特2級 및 1級인 外務公務員과 國家安全企劃部の 企劃調整室長
5. 高等法院部長判事級이상의 法官과 檢事長級이상의 檢事 및 次長檢事를 두는 支廳의 長인 檢事



6. 中將이상의 將官級 將校
7. 教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및 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각종學校의 長, 서울特別市·直轄市·道の 教育監 및 教育委員
8. 治安監이상의 警察公務員 및 서울特別市·直轄市·道の 地方警察廳長
9. 地方國稅廳長 및 2級 또는 3級 公務員인 稅關長
10.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 銀行監督院長,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의 會長·常任監事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職有關團體의 任員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의 公務員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職에서 退職한 者(第6條第2項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제1항

第8條 (登錄事項의 審査)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된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第17條 (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에의 就業制限)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 또는 職務分野에 증사하였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은 退職日로부터 2年間 退職前 2年이내에 담당하였던 業務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一定規模이상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이하 "營利私企業體"라 한다)에 就業할 수 없다. 다만,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제6항

第8條 (登錄事項의

⑥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虛偽登錄의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法務部長官(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審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 제11항

第8條 (登錄事項의 審査)

①第2項 내지 第8項의 規定은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頼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 2

第8條의2 (審査結果의 처리)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審査結果 第4條에 規定하는 登錄對象財産을 취하르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警告 및 是正措置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
3. 日刊新聞 廣告欄을 통한 虛偽登錄事實의 公表
4. 解任 또는 懲戒(罷免을 포함한다) 議決要請

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措置중 第3號의 措置는 다른 措置에 부수하여 併科할 수 있다.

제22조

第22條 (懲戒등)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解任 또는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産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1項·第3項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動事項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疏明資料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第10條第2項(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虛偽登錄등 불성실하게 財産登錄을 한 때
5.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의 審査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第13條 後段(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産登錄事項을 이 法에 정한 外의 目的으로 이용한 때
7. 第14條(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



產登錄事項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받은 贈物을 申告 또는 引渡하지 아니한 때

제23조내지 29조

第23條 (職務상 秘密을 이용한 財物取得의 罪) ①公務員·政府投資機關(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 및 地方公企業法 第5條·第49條·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直營企業·地方公社 및 地方公園의 任·職員이 그 職務상 知得한 秘密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③第1項의 罪를 범한 者 또는 그 情을 아는 第3者가 第1項의 罪로 인하여 취득한 財物 또는 財産상의 이익은 이를 沒收 또는 追徵한다.

(全文改正 93·6·11)

第24條 (財産登錄拒否의 罪) ①登錄義務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財産登錄을 거부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0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選舉候補者등이 正當한 사유없이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93·6·11)

第25條 (虛偽資料提出등의 罪) 公職者倫理委員會(第8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財産登錄事項에 관한 權限을 위임받은 登錄機關의 長등을 포함한다. 이하 第26條에서 같다)로부터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요구받은 각 機關·團體의 長이 正當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虛偽資料를 제출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6條 (出席拒否의 罪)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出席요구를 받은 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出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7條 (無許可 閱覽·複寫의 罪)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財



產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8條 (秘密漏泄의 罪)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産登錄業務에 증사하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밖의 者로서 職務상 財産登錄事項을 알게 된 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公開된 財産登錄事項의 財産登錄事項을 누설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3·6·11)

第29條 (就業制限違反의 罪)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退職公職者가 營利私企業體에 就業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평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 23호
----------	---------

제출년월일 : 1993.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김 호 동 

1.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 하므로써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수혜폭을 넓히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융자시 1세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1세대 7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담보제공시는 1세대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조례 제4조제1항)
-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후 24개월 균등 분할상환하던 것을 3년 거치후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함. (조례 제4조제2항)

명장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명장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7백만원, 담보제공시는 1세대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2항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용자금액 등) ①기금의 용자금액은 <u>1세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후 <u>24개월</u>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중 상환시기의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에 균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기, 반기 또는 연균등분할상환으로 조정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4조(용자금액 등) ①기금의 용자금액은 <u>1세대 7백만원, 담보제공시는 1세대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②----- ----- <u>36개월</u> ----- ----- ----- ----- ----- ----- ----- ----- -----</p> <p>③(현행과 같음)</p>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안

의안 번호	124
----------	-----

發議年月日: 1993年 8 月 日

發議者: 金樂雲 議員

外 6 人

□ 주 문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의 조기실현을 위해선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 되는 도세징수교부율을 인구 50만 이상인 시와 이하인 시·군에 차등 적용하고 있어 가득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어, 이에대한 불균형을 조정하여 줄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의 위임사무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50만이상인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부부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한 '90. 6.29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취지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따라 제기된 지방자치의 선제조건인 지방재정력 확충과 관련하여 판단해볼 때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징수에 관한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비용을 시.군.구에 교부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정 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 및 직할시의 자치구와 시의 교부율 50%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인구 50만이하의 시.군.구에 대한 교부율이 낮아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으며 입법취지에서 밝힌 위임사무의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50만 이상의 시.구나 그 이하의 시.군이냐 처리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은 같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9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강원도의 도세징수교부율은 30%로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그동안 지방자치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이 있음을 비추어 볼때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교부율의 차등 적용은 건실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군의회 전체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상 30%로 되어있는 인구 50만 이하 시.군의 도세징수교부율을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줄것을 바라는 6만 평창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 제안이유

1.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의 도세징수교부율을 인구 50만 이상 시와 50만 이하의 시.군에 차등 적용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취약한 50만이하 시.군이 불이익을 받으므로 도세징수교부율을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임.

道稅徵收交付率調整에 關한 建議文

地方自治 實施의 目的은 地域間 均衡發展과 地域住民의 欲求充足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의 早期實現을 爲해선 地方財政의 自立基盤 構築이 切實히 要求되는 現實입니다.

地方自治團體의 主要財源이 되는 道稅徵收交付率을 人口 50만 以上인 市와 以下인 市.郡에 差等 適用하고 있어 가득이나 어려운 地方財政의 壓迫要因이 되어, 이에 대한 不均衡을 調整하여 줄 것을 建議 하고자 합니다.

現行 地方稅法施行令 第41條의 規定에 依하면 "道는 市 郡이 道稅를 徵收하여 道에 納入한 때에는 納入한 道稅徵收金의 100分의 30에 該當하는 徵收交付金을 그 處理費로 當該 市.郡에 交付하여야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고,

地方稅法施行規則 第26條에는 "人口 50萬以上의 市에 對한 道稅徵收交付率은 100分의 50으로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는 市.郡.區의 委任事務等이 增加함에 따라 人口50萬 以上인 特別市 및 直轄市의 區와, 人口 50萬以上 市에 對한 徵收交付率은 이를 超過하여 內務部令으로 定할 수 있도록 한,

'90, 6.29 地方稅法施行令 改正 當時의 立法趣旨에는 合理的인 것으로 思料되나 地方自治의 全面 實施에 따라 提起된 地方自治의 先制條件인 地方財政力 擴充과 關聯하여 判斷해 볼때 이는 매우 不合理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徵收에 關한 道の 事務를 委任받아 處理하는 費用을 市.郡.區에 交付하는 것은, 妥當하나 財政 自立도가 越等히 높은 人口 50萬以上の 特別市 및 直轄市の 自治區와 市の 交付率 50%에 比해 財政自立도가 貧弱한,

人口50萬以下の 市.郡.區에 對한 交付率이 낮아 地方財政의 貧困을 招來하고 있으며 立法趣旨에서 밝힌 委任事務의 增加 側面에서 보더라도 50萬 以上の 市.區나 그 以下の 市.郡이나 處理하는 委任事務의 處理費用은 같을 것으로 判斷되기 때문입니다.

'93年度 本 豫算에 編成된 江原道の 道稅徵收 交付率은 30%로 他 市.道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매우 낮아 地域發展을 爲한 財源擴充이 切實히 要求되는 實情이며,

그동안 地方自治가 留保되어 왔던 가장 큰 理由中の 하나가 地方財政의 脆弱性和 地域的 不均衡이었음을 비추어 볼때 現行 地方稅法上 道稅交付率의 差等 適用은 健實한 地方自治의 早期定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平昌郡議會全體議員은 現行 地方稅法上 30%로 되어있는 人口 50萬以下 市.郡의 道稅徵收交付率을 50%以上으로 上向調整하여 줄것을 바라는 6萬 平昌郡民의 뜻을 모아 強力히 建議하는 바입니다.

特別消費稅를 目的稅로 轉換하려는 政府方針
撤回促求 建議에 對한 回信

친절 · 신속 · 공정 · 정확

정 부 합 동 민 원 실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2

(02) 735 ~ 0114

FAX : (02) 735 ~ 6091

문서번호 : 합민일 07000- 34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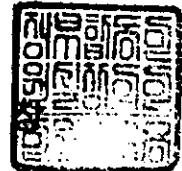
시행일자 : 199 3 . 8 . 2 .

수신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북 210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제목 민원사안 처리통보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신 민원사안을 검토한 바, 동 사안은 “
목적세 신설반대 ” 내용으로, 이는
재무부 에서 조사·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 부 합 동 민 원 실



재 무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504 - 3675 / 전송 503-9324

문서번호 소비 46016 -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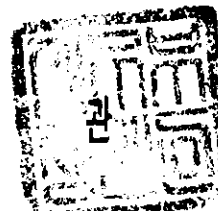
시행일자 1993. 8. 7 . (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에 대한 회신

1. 귀 의회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동 건의에 대하여는 우리부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재 무 부 장



수신처 영주군의회의장, 경주시의회의장, 평창군의회의장, 생강시의회의장